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 개선 법안 검토

백영화 연구위원

여약

- 최근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 개선 법안이 다수 발의됨.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보험계약자 측이 청구권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 규정하는 방안,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추가하는 방안 등이 있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거나, 보험금청구시부터 보험회사의 회신 시까지 소멸시효 진행을 정지시키는 방안은, 타 입법례나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방안이라고 보여짐.

- 그러나 소멸시효 기간 연장이나 기산점 변경과 같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 자체를 본질적으로 개혁하는 문제는, 장기 과제로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을 것임.
 - 소멸시효 제도 개선의 문제는, 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과 소멸시효 제도를 통한 법적 안정성 도모 필요성을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임.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단기소멸시효 제도를 본질적으로 폐지하자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됨.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보험계약자 측이 청구권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 규정하는 방안은, 보험금청구권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민법」상 소멸시효 기산점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일 것임.

- 한편, 향후에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측에 설명해야 할 대상을 명확히 규율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예컨대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시 보험회사로 하여금 우선 보험계약자의 모든 보험가입내역을 설명하도록 하고 각 보장금부별로 해당 여부와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면, 소비자의 실질적 권리 행사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1. 검토배경



■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됨.

- 특히 생명보험회사의 자살보험금 사태 이후,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를 개선하자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됨.
- 자살보험금 사태에서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¹⁾함으로써, 현행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가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의식하에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것임.

〈표 1〉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 개선 관련 계류 의안²⁾

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주요 내용
200083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의원 등 12인)	2016. 7. 12	• 보험계약자 측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추가
20010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 의원 등 12인)	2016. 7. 21	• 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한 경우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추가
200488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 의원 등 10인)	2016. 12. 30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20051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 의원 등 13인)	2017. 1. 16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보험회사 또는 모집중사자의 설명의무, 설명확인절차 미이행 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
200540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 의원 등 10인)	2017. 2. 2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보험계약자 측이 청구권이 발생했음을 안 때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알 수 있었던 때로 규정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의 내용은 크게 ①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사항, ②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사항, ③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

- 본고에서는 위 각 쟁점들에 대해 소비자 보호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검토해보고자 함.

1)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2) 이외에 자살보험금 건에 대해 소멸시효의 특례를 인정하자는 내용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안(김선동의원 등 10인)」도 발의되었으나, 이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은 아니므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함.

2.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관련 검토



- **현행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데, 이를 5년으로 연장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정재호 의원 발의 「상법 개정안」, 김해영 의원 발의 「상법 개정안」, 민병두 의원 발의 「상법 개정안」).**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단기소멸시효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현행 「상법」은, 보험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험 관련 청구권의 경우 일반 채권보다 짧은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이른바 단기소멸시효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³⁾**
 - 보험의 경우 다수의 보험계약자들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여 놓고 이것이 향후 발생할 보험사고들에 대비한 책임재산으로서 기능하게 됨.
 - 따라서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여 재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소멸시효를 인정한 것임.
 - 대법원도 “보험사업의 정상적인 업무운용을 위해서는 보험금의 신속한 결제를 통하여 보험업자의 재산상태의 명료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단기소멸시효제도의 취지를 인정하고 있음(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47094 판결).
 - **또한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금 지급 여부의 판단 및 보험금액 확정 등을 위해 보험사고 조사가 필수적인데, 장기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기간 경과에 따른 증거 소멸, 기억 감소 등으로 인해 보험사고 조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음.**
 - 특히 요즘 보험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에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보험사기 조사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또한 이미 2014년에 「상법」 개정을 통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어, 2년여 만에 이를 재연장한다는 것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임.**
 - **보험금청구권에 대해서는 1962년 「상법」 제정 당시부터 2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왔는데,**

3)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 것에 비하여, 보험금청구권 및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2년으로 단축되어 있음(「상법」 제662조).

2014년 「상법」 개정을 통해 이를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모색하였음(2015년 3월 12일 시행).

- 2014년 개정 당시에도 해외사례, 보험회사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내린 것으로 이해됨.
- 개정 「상법」 시행 후 약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입법례에 의하더라도, ‘3년’이라는 소멸시효 기간 자체가 짧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일본 「보험법」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임(일본 「보험법」 제95조).
- 독일의 경우 모든 청구권(보험금청구권 포함)에 대하여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됨(독일 「민법」 제195조).
- 프랑스 「보험계약법」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임(프랑스 「보험계약법」 L.114-1조).⁴⁾

■ 결국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는 성급히 결론 내릴 사항은 아니며, 장기적으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됨.

- 보험금청구권에 대해 단기소멸시효를 인정할 필요성과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양자 모두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것임.
-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단기소멸시효 제도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틀 안에서 실질적인 소비자의 권리 행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이에 단기소멸시효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비교·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4) 다만 생명보험에 있어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와 다른 사람인 경우 등에는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됨.

3.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관련 검토



■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서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따라 주관적 체계와 객관적 체계의 두 가지 입법론이 있음.

- 주관적 체계는 권리자의 주관적 인식 내지 인식가능성을 요건으로 하여,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함.
 - 권리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는 자에게만 소멸시효 완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권리 박탈을 정당화하기 쉬워짐.
 - 그러나 권리자의 주관적 인식 내지 인식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아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객관적 체계는 권리자의 주관적 인식과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함.
 -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음.
 - 그러나 권리 발생의 인식 내지 인식가능성이 없었던 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객관적 체계를 채택하고 있음(「민법」 제166조 제1항).

- 권리자의 주관적 인식 내지 인식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임.
- 위 「민법」 원칙에 따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가 원칙적으로 그 기산점이 됨.
 -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봄(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6558 판결 등).⁵⁾

5) 다만 예외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398 판결 등).

- 이와 관련하여,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청구권이 발생했음을 안 때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알 수 있었던 때’로 규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민병두 의원 발의 「상법 개정안」).
-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권리자의 인식 내지 인식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 주관적 체계를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론으로서 검토해볼 가치가 있을 것이나, 이는 「민법」상 소멸시효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즉,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기존의 객관적 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주관적 체계를 도입할 것인지는 여부는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의 원칙으로서 정리되어야 할 문제이지, 특별히 보험금청구권 의 경우에만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짐.
 - 아울러 소멸시효 기산점 설정과 관련하여 만약 주관적 체계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소멸시효 기간의 단축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
 - 일반적으로 주관적 기산점 체계에 의할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기의 소멸시효 기간을 인정함.
 - 최근의 입법동향도 소멸시효 기간을 단축하면서 동시에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을 주관화하는 경향이 있는 바,⁶⁾ 예컨대 독일의 경우 2002년 「민법」 개정 시 장기의 소멸시효 기간(30년) 및 객관적 체계에서, 단기의 소멸시효 기간(3년) 및 주관적 체계로 전환한 바 있음.

4.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 관련 검토



- 소멸시효의 중단은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그 때까지 진행하였던 소멸시효 기간은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원래의 시효기간이 새로 진행되는 것임.
 - 우리 「민법」은 ① 청구(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내지 임의출석, 최고), ②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③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음(「민법」 제168조, 제170조 내지 제174조).

6) 주석 「민법」 총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p. 570.

- 이 중 최고(催告)의 경우에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여야 시효 중단이 효력이 있음(「민법」 제174조).
 -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 통지로서, 이에는 특별한 절차나 형식이 요구되지 않음.
 - 최고는 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소의 제기 등 정식적인 중단 절차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시효 완성을 일시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예비적·잠정적 조치로서 이용되는 것임.⁷⁾
- 이와 관련하여, 박용진 의원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보험금 지급 청구’를, 주승용 의원 발의 「상법 개정안」에서는 ‘보험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및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한 경우’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추가하고자 함.
- 우선, ‘보험금 지급 청구’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추가하는 방안은, 「민법」상 시효중단에 관한 원칙과 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여기서 ‘보험금 지급 청구’는 「민법」상의 최고에 해당하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민법」상 최고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 정식적 시효중단 절차를 취해야 하는 예비적·잠정적 조치에 불과함.
 - 보험금 지급 청구에 대해 확정적인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민법」상 시효중단에 관한 원칙과 체계에 어긋남.
 - 또한 어떠한 특별한 절차나 형식도 요구되지 않는 단순 최고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무기한으로 소멸시효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보험금 지급 청구’의 경우에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청구 시부터 보험회사의 회신 시까지 소멸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⁸⁾ 이는 일응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짐.
 - 소멸시효 ‘정지’의 경우에는 정지 사유가 있는 동안 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않고 멈추어 있다가 해당 사유가 끝난 후에 나머지 시효기간이 진행되는 것임.⁹⁾
 - 위 방안은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최고 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7) 주석 「민법」 총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p. 626.

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무위원회 검토 보고서(2016. 11).

9) 소멸시효 ‘중단’의 경우 중단 사유가 끝난 후에 시효기간(보험금청구권의 경우 3년)이 다시 처음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과 구별됨.

준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9467 판결 등)의 취지에도 부합함.

■ ‘보험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같은 불명확한 개념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짐.

- 어떠한 경우에 ‘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발생 여부 자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음.
- 이처럼 불명확한 개념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소멸시효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할 수 있음.
- 보험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비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여짐.¹⁰⁾

■ 한편 ‘분쟁조정신청’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추가하는 방안은 타당한 면이 있으며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방안이라고 생각됨.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그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민사 조정의 경우 조정신청이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조정법」 제29조 및 제35조),¹¹⁾ 마찬가지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겠음.
- 실제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정 절차와 관련하여 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한 입법례들이 있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분

10) 한편,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관한 것은 아니나,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 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지는 방안도 제시되었는데(김해영 의원 발의 「상법 개정안」), 이 역시 개별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아예 소멸시효 적용 배제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짐. 특히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대상에는 보험금 청구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들도 존재하는데(예컨대 보험료,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 모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임.

11) 다만 조정신청이 취하된 경우, 신청인의 불출석으로 조정신청 취하 간주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민사조정법」 제35조 제2항).

쟁조정신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3)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 한국의료분쟁조정증재원에 대한 조정신청(「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건설산업기본법」 제78조의2) 등
- 다만 분쟁조정신청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하는 것은 비단 보험금청구권에 한정할 것은 아니며 모든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동일하게 적용될 문제일 것임.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5. 결론



- 최근 제시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 개선안 중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하거나, 보험금청구 시부터 보험회사의 회신 시까지 시효 진행을 정지시키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방안이라고 보여짐.
- 다만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거나 소멸시효 기산점을 주관적 체계로 변경하는 방안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개혁에 해당하므로, 이는 장기 과제로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입법적·정책적으로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됨.
 - 소멸시효 제도 개선의 문제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과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
 - 자살보험금 사태가 있었다고 하여 성급히 결론 내리기보다는,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단기 소멸시효제도의 취지, 소멸시효에 관한 기존 「민법」의 체계와 원칙 등도 함께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 한편, 소멸시효 제도와 별도로,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음.

- 예를 들어,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시 보험금 지급 내역,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음(「보험업법」 제9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
- 그런데 해당 보험계약상 여러 종류의 급부가 있고 이 중 일부의 급부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일부의 급부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무엇을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 이에,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시 보험회사로 하여금 우선 보험계약자의 모든 보험가입내역을 설명하도록 하고 각 보장급부별로 해당 여부와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면, 소비자의 실질적 권리 행사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¹²⁾ **kiri**

12) 보험금 지급 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설명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하는 내용의 법안이 있으나(김혜영 의원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소비자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 보험계약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보다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단계에서 보험계약자 측에 설명해야 할 대상을 명확히 규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됨.